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56947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무변론(피고 1.)

2015. 5. 29.(피고 2.)

판결 선고2015. 7. 1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1,789,012원 및 그 중 81,315,697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특허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이 2014. 8. 29. 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특허청 2014. 8. 29. 접수번호 C로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들이 2014. 8. 29. 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특허청 2014. 8. 29. 접수번호 C로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A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이다. 당시 피고 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피고 B도 이를 알았으므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은 이 사건 특허권의 1/2에 관하여 지분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변제를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 A이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1,789,012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2014. 10. 8. 발생하였으나, 이미 2014. 8. 6. 피고 A이 원고가 보증한 금융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무렵 채권발생에 관한 개연성이 존재하였음), 무자력

상태인 피고 A이 2014. 8. 29.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특허청 접수번호 C로 권리이전등록까지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를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특허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피고들 사이의 2011. 6. 25.자 계약 중 제2조 내지 제6조의 내용, 피고 B이 그 계약에서 부담하던 금원지급 의무를 이행한 점, 이 사건 특허권은 위 계약 제2조에서 의미하는 대상기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 행위 중 이 사건 특허권의 1/2 지분에 한하여서는 변제의 성격이 있어 이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고, 다만 나머지 1/2 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2014. 8. 29. 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특허청 2014. 8. 29. 접수번호 C로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훈

별지